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



※ 2025년 08월 29일자 '청약Home' 및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34Page [발코니 확장 공사비_주택형]

-기존

주택형(타입)	금 액	비고
47A,47B,47C,47D,52	무상제공	

-정정

주택형(타입)	금 액	비고
47A,47B,47D,52	무상제공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44-344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8.29.(금)	25.09.08.(월)	25.09.09.(화)	25.09.10.(수)	25.09.16.(화)	25.09.17.(수)~ 25.09.23.(화)	25.09.29.(월)~ 25.10.01.(수)

1	공통유의 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청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청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촉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촉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청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청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청자 선정 이후에도 당청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청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청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청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청이 되면 당청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청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청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청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정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점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홈대센트럴아르떼해모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29.**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일 정	9월 8일(월)	9월 9일(화)	9월 10일(수)	9월 16일(화)	9월 17일(수) ~ 9월 23일(화)	9월 29일(월) ~ 10월 1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우편접수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분양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8-1, 402호(한양빌딩)]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상기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는 별도의 건물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분양홈페이지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세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 분양홈페이지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단위: 세대,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해당 세 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1회(20%)	2회(20%)	3회(20%)	
								2026-01-08	2026-03-08	2026-06-08	
32	14	2층	1	304,928,000	281,472,000	586,400,000	58,640,000	117,280,000	117,280,000	117,280,000	175,920,000
		3층	1	310,440,000	286,560,000	597,000,000	59,700,000	119,400,000	119,400,000	119,400,000	179,100,000
		4층	1	315,952,000	291,648,000	607,600,000	60,760,000	121,520,000	121,520,000	121,520,000	182,280,000
		5~15층	11	323,752,000	298,848,000	622,600,000	62,260,000	124,520,000	124,520,000	124,520,000	186,780,000
47A	9	2층	1	436,852,000	403,248,000	840,100,000	84,010,000	168,020,000	168,020,000	168,020,000	252,030,000
		3층	1	444,756,000	410,544,000	855,300,000	85,530,000	171,060,000	171,060,000	171,060,000	256,590,000
		4층	1	452,608,000	417,792,000	870,400,000	87,040,000	174,080,000	174,080,000	174,080,000	261,120,000
		5~10층	6	463,736,000	428,064,000	891,800,000	89,180,000	178,360,000	178,360,000	178,360,000	267,540,000
47B	4	8~11층	4	465,140,000	429,360,000	894,500,000	89,450,000	178,900,000	178,900,000	178,900,000	268,350,000
47C	17	2층	1	433,940,000	400,560,000	834,500,000	83,450,000	166,900,000	166,900,000	166,900,000	250,350,000
		3층	1	441,740,000	407,760,000	849,500,000	84,950,000	169,900,000	169,900,000	169,900,000	254,850,000
		4층	1	449,592,000	415,008,000	864,600,000	86,460,000	172,920,000	172,920,000	172,920,000	259,380,000
		5~18층	14	460,616,000	425,184,000	885,800,000	88,580,000	177,160,000	177,160,000	177,160,000	265,740,000
47D	4	7~10층	4	467,272,000	431,328,000	898,600,000	89,860,000	179,720,000	179,720,000	179,720,000	269,580,000
52	4	3층	1	497,016,000	458,784,000	955,800,000	95,580,000	191,160,000	191,160,000	191,160,000	286,740,000
		4층	1	505,856,000	466,944,000	972,800,000	97,280,000	194,560,000	194,560,000	194,560,000	291,840,000
		5~6층	2	518,284,000	478,416,000	996,700,000	99,670,000	199,340,000	199,340,000	199,340,000	299,010,000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 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가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가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일부 무상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것을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사본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공급

구 분(약식표기)		32	47A	47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서울특별시)	-	-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	-	1	1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		2	2	4	8
생애최초 특별공급		2	-	2	4
합 계		4	2	9	15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자격 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16(화) ~ 2025.09.2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신청 내용과 대조 등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서류 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방법	서류제출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9.17.(수요일) ~ 2025.09.23 (화요일) / 7일간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8-1, 402호(한양빌딩)]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9)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분양사무실에 비치(특별공급신청서는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1년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직계존속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계약장소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 서류 (<표1>참조)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계약장소에 비치)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신고 사실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 현황 (<표2>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전국)(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계약장소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재혼가정에 한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참조)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 서류 (<표1>참조)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추가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계약장소에 비치)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신고 사실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계약장소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 현황 (<표2>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전국)(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 · 자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미분양 주택 확인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서약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계약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1년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피부양 직계비속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자 직계존속 배우자 유무 및 분리세대 확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 본인 발급분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미분양 주택 확인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표1>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기재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4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①,②,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4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4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월별급여명세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24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첨부(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사업자등록증 첨부(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4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①, ② 해당직장 ③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장소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② 해당직장,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원본(원천징수영수증 포함)	① 해당직장, 세무서(또는 홈택스)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 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또는 홈택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사례) 2015, 2016, 2018, 2021, 2023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9.29. (월요일) ~ 2025.10.01. (수요일) / 3일간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시행사, 수분양자가 각각 50%씩 균등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지연에 귀책이 있는 자가 가산세 전부를 부담합니다.(종이문서용 전자인지 분실 혹은 훼손시 납부 사실이 무효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인지세 납부 방법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② 10억원 초과 : 35만원
발코니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②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③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는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계약부활요청서 (방문장소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약부활요청서’(계약장소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 입주자 점수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임주계획서	○		-	- 계약 장소에 비치(당사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임주계획서 작성 필수
	전자수입인지	○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홈페이지(https://홍대센트럴아르떼해모로.com)인지세안내문 참조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위임용)
	위임장		○	청약자	계약장소에 비치. 계약자(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KB국민은행	344901-04-134167	케이비부동산신탁(주)(서부피에프금융)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분양사무실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담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이자정산일”이라 한다)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및 공급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시 계약자측 귀책에 의한 해제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 중 위약금 및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준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것으로 봅니다.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 는 추후 통보함.

■ 부대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 입주민카페 등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미확장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준공이후 발코니 확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누수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장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 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고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이므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무상 제공 품목

주택형(타입)	품목	정보	비고
32	주방벽, 상판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욕실1 비데	분리형 비데	
	인덕션	2구	
	냉장고	F/S 냉장고(300L)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세탁+건조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안방)	
47A,47B,47C,47D,52	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욕실1 비데	분리형 비데	52타입은 욕실2에 시공
	인덕션	2구	
	냉장고	F/S 냉장고(300L)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세탁+건조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안방)	
	중문	스윙도어/슬라이딩도어(3연동)	47A,47B,47D(스윙도어) / 47C,52(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	(침실1)시스템선반+가구도어	47D타입 제외

※ 상기 품목은 흥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세대의 기본제공 품목입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추가)

주택형(타입)	설치위치	에어컨 대수	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시)	
47A,47B,47C,47D,52	침실2	1	1,000,000	100,000	900,000	

- 시스템에어컨은 거실, 침실1에 기본 제공되며, 위 선택사항은 기본 제공되는 위치 제외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추가) 옵션 미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침실에는 천정형 냉매매립 배관이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전실 설치를 기준으로 제공되오니 개별 설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유의사항

-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전선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제조사의 도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천장 마감공사 전 실내기 설치가 선행되는 품목으로 설치된 제품의 제조년월이 입주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344901-04-134167	케이비부동산신탁(주)(서부피에프금융)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계약체결시 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세대별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현금 /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계약 진행됩니다.
-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해제가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이후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개별기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공통

-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계약시 계약장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확인 후 계약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s://홍대센트럴아르떼해모로.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최저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운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 티(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켓,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제작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공간에는 대피공간이 제공되며, 대피공간에는 물건등을 적재하실 수 없습니다.
-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사용품, 전시조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환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마감재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아래 품목은 실시공 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기기 :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수도계량기함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설비
- ※ “사업주체”의 설계변경에 따른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및 면적 변경과 특화 공사 등으로 인한 공용부분의 일부 면적과 카탈로그 상의 배치도, 투시도의 구획선 또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기 각 사항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① 단지 내 시설물(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 명 등) 및 입면 옥상 조형물, 색채 등
 - ② 조경 식재와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담장의 형태, 위치 등
 - ③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 향후 설계 변경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동 아파트의 외관 사양 등이 상향 조정될 때 계약자 추가 부담 없이 시공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에 따른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의 배치상 세대 상호 간에 향, 층, 주변시설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가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노출되어 조망권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에 위치하는 일부 동에 대해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경시설의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형태, 색채,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분양자는 본 계약 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담장,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세대 또는 저층 세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승인도서상의 구조방식이나 기초의 형식 등은 본 공사 시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분양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으며, 이때, “수분양자”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임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등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아파트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도로변 세대는 교통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면적 등은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면적의 증감에 대한 분양대금은 환급하거나 주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등에 의거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 위치와 개수는 본 시공시 변경되거나 추가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향후 주변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동 세대에서 조망가림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음기준 미달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준공인가 후 아파트의 내부 구조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부

-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치된 가구 사이즈에 따라 입주자가 기 소유한 가전기기 등이 수납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벽체나 천장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TYPE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화장실 바닥배수구 위치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세대 내 벽체 및 바닥에는 전기, 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파손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문제발생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위생기구, 악세사리, 바닥 배수구, 수전, 선풍통 등은 위치 및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가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세대별 현관 전면이 맞은편 세대와 마주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바닥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에는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세대의 거실의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공사 시, 석재류, 타일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써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샷시 설치 기준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 시 일부 세대의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용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 철재난간)의 높이와 샷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손빨래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 각 평형별 유상오피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 선택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재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연자재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석재의 결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치됩니다.
- ※ 침실1(안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 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세대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가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하부 필로티로 인하여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 세대에는 화재 등 유사시 대피를 위한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각 세대별 대피공간 위치는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인쇄물을 통해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세대 외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 세대 창호 관련 본공사시 규격, 사양, 제품,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침실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준으로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설치로 인하여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전실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기본제공으로 주책형별로 기본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에는 천장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냉매배관이 전실 설치됩니다.
-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시(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안방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입면변화 및 개방형 발코니 적용 여부가 세대별로 다르며 적용여부를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벽, 천장 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싱크대, 불박이장, 화장실 도기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안방 발코니(발코니1)에는 세탁기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다용도실(발코니2)에는 세탁기 배치를 고려한 설비가 미구획되어 세탁기 배치 및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점 필히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세대 내에는 거실 창호 상부에 강제환기가 가능한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하며,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2.3m로 높이 გადა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하여 일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지상1층에 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주변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저관리형 옥상녹화가 적용되며, 세대에서 접근 및 개인적인 이용이 불가합니다.
- ※ 단지내 소방차량동선 및 소방차정차구역은 인허가 변경 및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내 보안등 등 경관조명으로 인접 세대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자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수경시설 설치,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자충부 및 고충부 세대는 옥외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라인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인쇄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공원,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필로티 및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필로티 및 지상층, 주민공동시설 하부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포함),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출차 경고 알림음,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은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보도 침하등의 이유로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 ※ 입주 전 입주계획을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배정받은 날 엘리베이터로 반드시 이삿짐 운반을 하여야 합니다.
-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개발계획(변경포함)에 따른 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본 사업은 서교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라인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발전설비는 옥상에 설치됩니다. 실시공시 옥상구조물에 의한 간섭 및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충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 세대의 경우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필로티에는 제연 환풍 및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접 라인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석재 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건물의 영향으로 일조, 조망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 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제연환풍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경 레벨 계획 변경으로 일부 필로티, 동출입구의 계단 및 램프 길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세대는 특화된 동출입구에 따라 일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우편물수취함, 택배보관함은 특정 장소에 지정되어 위치합니다.
- ※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상, 지하층 환풍, 지상층EPS 등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거, 이동통신사업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 EPS/TPS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여유공간 부족 시, 인접층 EPS/TPS내 이동통신사별 중계장치를 분할 설치합니다.(비주거)
- ※ 지상층 이동통신 전파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형 안테나의 추가 설비가 현장 협의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계 분은 현장 실시설계 이후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일부 지붕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 장식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내 빛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흙막이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주민카페 등이며 기타시설로 통신전자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평면 및 단면 계획변경에 따라 외부 입면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피트니스는 기본 마감 제공 및 집기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부대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입주민카페, 입주민 회의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상이할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우선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라인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노유자시설 등은 외부인에게도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합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 대지 경계 바깥 시설 및 녹지는 시공사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앞 8M 도로를 사이로 주택가 및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있어 소음, 교통혼잡,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형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공사시 배선기기, 가스계량기 및 통신·분전반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주)승우엔지니어링	660,180,000
전기, 소방, 통신	(주)지케이엔지니어링	505,000,000

■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 공급계약 또는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및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 상기내역은 참조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고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장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내진중요도 1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XII)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적용여부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2층 주차장 : 2.3m 지하1층 주차장 : 2.3m	지하2층 주차장 : 2.3m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29,820,280,000원-	제 01292025-101-0003500 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하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한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갑”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상품의 도시재생기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을 실시함에 체결한 표준사업약정(주택도시보증공사 사규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서식 제16호)(이하 “약정”이라 한다.)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작성되고 공급계약체결시 포함될 내용입니다.

· 분양관리

- ① “갑”은 “을”의 전매요청시 “갑”의 대출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대출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 없이는 “을”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계약을 하지 않는다.
- ②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을 환불할 때에는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분양대금 반환금 중 보증부대출금은 위약금(손해배상에정금, 위약벌도 포함)에 우선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도록 한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 ① “갑”은 “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하며 “갑”은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 1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 세대 중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양대금 중 일부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이행
 2.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

· 보증부대출금의 상환 등

- ① “갑” 및 “병”은 “갑” 및 “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부담금·분양대금·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갑” 및 “을”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② “갑”은 본조에 대하여 “을”과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서 사본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한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 공급계약 또는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및 교환 등만 해당.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위탁자 :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형 신탁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탁자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사업시행형 신탁계약에 근거함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위 분양대상 물건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위탁자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시행형 신탁사업임을 분양계약자는 인지한다.
- 공급계약서 기재 분양대금 수납계좌(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본 공고상의 각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 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상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
-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과 위탁자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일부세대의 소유권이전포함) 등을 의미함)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자(매도인)의 지위 및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이 부담하는 제반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 조치 없이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 우선수익자의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탁자(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위탁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수분양자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위탁자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 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수탁자의 사전승인 없는 위탁자와 수분양자 간의 별도 약정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대하여 일체의 효력이 없다.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

구분	내용
부동산개발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등록번호 서울 080129호
부동산개발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7~8층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내용	2022년 12월 01일 사업시행계획인가(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219호) 2023년 11월 23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7호) 2025년 06월 26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13호)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대 대 3,331.00㎡ 건축용도 : 공동주택(1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착공일, 준공예정일	2024년 04월 09일 착공 / 2026년 10월 18일 준공(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대지소유권 100% 확보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자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주)에스엔에스파트너스
분양대금관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 홈페이지 :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https://홍대센트럴아르떼해모로.com>)

■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8-1, 402호(한양빌딩)

■ 분양문의 : 1644-344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